



주요 판례분석

‘약학정보원 사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민형사적 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 및 시사점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도415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42045 판결)

1. 사안의 개요

- 약학정보원이 조제 관리·심사청구 프로그램 PM2000을 통해 약국의 조제정보, 심사청구정보와 이에 포함된 환자, 의사의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하여 수년간 글로벌 의료데이터 업체(이하 “**데이터업체**”)에 제공한 사건(이하 “**약학정보원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소송(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관련)이 각 제기되어 계속되어 왔음.
- 그런데 최근 약학정보원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나오므로써 관련된 법적 공방이 모두 종결되었음. 대법원은 약학정보원 사건 관련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도415 판결), 민사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인정되나 정보주체의 정신적 피해는 없다고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음(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42045 판결).
- 재판 과정에서는 ① 암호화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③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제공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음.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원심 판결에 초점을 맞추어 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봄.

2. 법원의 판단

가. 암호화된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 법원은,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identifiable)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암호화 등 적절한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면 이는 식별성을 요건으로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등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다만,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식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존재한다면 적절한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 약학정보원 사건에서는 기본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에 관하여 홀·짝수 자리에 따라 영문자로 1:1로 대응하는 일종의 데이터 마스킹(data masking) 알고리즘이 적용된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법원은 위 기준에 입각할 때 이러한 암호화 방식은 다양한 추론을 통해 쉽게 복호화할 수 있어 개인이 식별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고의 판단기준

- 법원은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 또는 암호화 조치가 된 경우, 그와 같은 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려면, 비식별화 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식별화 또는 복호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그와 같은 정보를 식별 가능한 형태의 정보로 치환하여 처리하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까지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제공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

- 법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그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 법원은 본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가 데이터업체 외 제3자에게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의 유출범위가 제한적인 점,** 이 사건 정보가 통계자료 목적으로 활용되었을 뿐 그밖에 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3. 시사점

- 위 판결은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의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의 요건까지 제시하고 있는 판결로서 의미가 있는바, 위 판결이 근거로 삼은 판단기준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Korea | Vietnam | China | Myanmar | Russia | Indonesia*
* in association with Roosdiono & Partners

[구독신청](#) | [율촌 간행물 더 보기](#) | [Contact Us](#)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2024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